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정법주

충청북도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박용규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5년 5월 30일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6월 2일

3. 제안이유

미래 지속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충청북도 산림자원의 효율적 경영과 지역산림문화·휴양 서비스를 활성화 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, 충청북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다원적 기능 증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
나.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다. 지역산림문화·휴양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
라. 산림문화·휴양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마. 산림문화·휴양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바. 산림치유 활성화 및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 및 제8조)

사. 산림문화·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

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 개정의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·휴양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의 다양한 산림자원을 발굴·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보전 및 이용하고자,
 - 상위법령인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산림휴양법’이라 한다.)에 따라 지역산림문화·휴양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사업 추진 등으로 충청북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다원적 기능 증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그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주요 내용 검토

- 용어의 정의 및 도시사의 책무 규정(안 제2조~제3조)
 - 본 조례에 규정한 용어의 정의는 상위법령인 「산림휴양법」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연계성을 확보하였으며, 산림문화·휴양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 지역산림문화·휴양 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도시사의 책무를 규정함.
- 지역산림문화·휴양계획의 수립·시행 등 및 실태조사 시행 추진 근거 마련(안 제4조~제5조)
 - 「산림휴양법」 제4조제3항¹⁾에서는 관할 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림문화·휴양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,
 - 지역계획 수립 시 산림문화·휴양자원 현황과 관리 및 활용방안,

1) 「산림휴양법」 제4조(산림문화·휴양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~② (생략) ③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림문화·휴양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④ ~ ⑫ (생략)

시설 안전관리 방안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,

- 자원현황 파악 등의 자료수집을 위한 “실태조사”를 「산림휴양법」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○ 산림문화·휴양을 위한 사업 추진(안 제6조)

- 산림문화·휴양에 관련한 조사 및 연구와 휴양시설 조성 및 정비,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의 충청북도 산림문화·휴양에 필요한 사업들을 규정함.

○ 산림치유 활성화 및 전문인력 활용근거 마련(안 제7조~제8조)

-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「산림휴양법 시행규칙」 제12조의2에서 규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*을 개발 및 보급하고,

* 자연의 다양한 요소와의 접촉·관찰 등 체험프로그램, 보행·등산·체조 등 운동프로그램, 휴식·놀이 등 여가프로그램

- 「산림휴양법」에서 규정하는 산림치유지도사,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.

다. 조례의 절차적·기술적 사항

- 조문 상호 간 상충되거나 상위 법령 및 다른 조례를 침해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에 따라 명확하게 표현하였고, 비용추계서 등의 필요자료를 적정히 제공함.

-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 및 조례안 예고(`25. 6. 2.~`25. 6. 7.) 등을 통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관한 직접참여 보장을 충실히 이행함.

6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여가활용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시책의 지속발전을

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에 따라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이 타당함.

- 이에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도민의 제도적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문화·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,
 - 「산림휴양법」 제3조²⁾의 산림문화·휴양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관련 자원의 균형있는 보전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- 또한, 지역산림문화·휴양자원의 적극 발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여,
 -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산림문화·휴양 기반 조성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확대가 기대됨.
- 아울러 건강증진 차원에서는 산림치유 기능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,
 - 산림치유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및 전문 인력 활용에 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이에 집행부에서는 관계기관 및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어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따라 충청북도 산림문화·휴양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됨.

2)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·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산림문화·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.